

공업배치법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업배치법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제 9, 250호

1978년 12월 30일

공업배치법시행기일예관한규정

법률 제3,069호 공업배치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법 제 7조 및 동법부칙 제 2조제 1항의 규정은 1979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공업배치법(이하 “법”라고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전촉진지역) 법 제 2조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 촉진 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의정부시
3.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주내면·백석면·장흥면
별내·진접면·진건면·와부면·미금면
4.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원당면·지도면·중면·벽제면

제 3 조 (제한정비지역) 법 제 2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 정비 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 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 24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1. 부산시(북구 모라동·삼락동·덕포동·패법동·감전동·학장동, 주례동·염중동·및 서구 신평동·장림동·다대동을 제외한다).
2. 경기도 인천시
3. 경기도 수원시
4. 경기도 성남시
5. 경기도 안양시
6. 경기도 부천시
7.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8.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서면·남면·의왕면·수암면·군자면·소래면

9.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10.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양서면·서종면

11. 경기도 광주군 광주면·조월면·퇴촌면·남종면·동부면·서부면·중부면

12.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계양면

제 4 조 (재료의 제출) 상공부장관은 법 제 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이하 “공업배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에게 법 제 4조제 2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공장입지의 조사) ① 상공부장관은 법 제 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의 조사를 5년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공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의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거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공장입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 (공장대지면적등의 산출) ① 법 또는 이영에서 “공장건축면적”이라 함은 연면적을 말한다.

② 공장대지면적과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공장설치신고의 대상) ① 법 제 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할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대지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공장의 증설인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공장대지면적과 증설한 부분의 공장대지면적을 합제한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2. 공장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공장의 증설인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공장건축면적과 증설한 부분의 공장면적을 합제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② 법 제 7 조 제 1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외자도입법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3. 양곡관리법
4. 농약관리법
5. 비료관리법
6. 사료관리법
7. 축산물가공처리법
8. 수산업법
9. 잠업법
10. 전기사업법
11. 식품위생법
12. 약사법
13.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14. 담배전매법
15. 홍삼전매법
16.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③ 주무부장관은 제 2 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공장설치에 관한 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장 입지에 관하여 미리 상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8 조 (공장신설등의 신고절차) ①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치신고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공부장관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공장설치신고 확인서를 당해 신고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제 9 조 (조정명령) 상공부장관이 법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변경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정·변경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 10 조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의 달성기간) ① 법 제 11 조 제 1 항에서 “공장설치를 완료한날”이라 함은 건축법상 건축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준공예정일내에 건축법상 건축의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준공예정일을 공장설치를 완료한 날로 본다.

② 법 제 11 조 제 1 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별표 1 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기준초과용지의 유예기간) 법 제 11 조 제 2 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1 년으로 한다.

제 12 조 (기준초과용지의 산출) ① 법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text{공장대지면적} - (\text{공장건축면적} \times \frac{1}{\text{기준공장면적율}})$$

② 제 1 항의 규정의 의하여 산출한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이를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제 13 조 (기준초과용지의 매각예고기간) 법 제 12 조 제 1 항의 “대통령으로 다시 정하는 기간”은 1 년으로 한다.

제 14 조 (기준초과용지의 대리매각권자) 법 제 12 조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2.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

제 15 조 (기준초과용지의 매각범위) 기준초과용지의 매각범위는 다음 각호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인천시·대구시·대전시·광주시·전주시 및 이들 도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읍·면에 소재하는 공장용지에 있어서는 330제곱미터
2. 제 1 호 이외의 시에 소재하는 공장용지에 있어서는 1,000제곱미터
3. 제 1 호 및 제 2 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지에 있어서는 1,650제곱미터

제 16 조 (기준초과용지의 매각협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의 매각예고기간이 지난 때에는 기준초과용지의 면적, 매각의 취지 및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절차를 공장용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장용지의 소유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 월내에 공장용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장용지의 소유자는 다시 그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 월내에 매각대상 용지의 범위·매각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장용지의 범위·매각방법 및 시기를 정할 때에는 그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7 조 (기준초과용지의 매각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제 1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라 협의 또는 결정한 날로부터 30 일 내에 매각대상용지의 매각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 18 조 (공장의 범위) ① 법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건축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5 인이상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는 기존건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9조 (이전촉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증설) 법 제13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촉진지역안에서 증설할 수 있는 공장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증설의 범의는 1977년 3월25일 현재의 공장건축면적의 100 /100이내 이어야 한다.

1.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내의 공장일 것.
2.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일 것.

제20조 (제한정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법 제13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정비지역안에서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는 공장은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안의 공장으로서 하며, 별표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공장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한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공장의 신설의 경우에는 공장 건축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1.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안의 공장일 것.
2. 다음 요건을 갖춘 공장일 것.
 - 가. 이 영 시행당시 공장용지로 조성되어 있고, 배수시설이 된 폭 6미터 이상의 진입로가 있는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있을 것.
 - 나. 공업지역으로서의 존속이 불가피할 것.
 - 다. 배수체계 또는 지역조건상 상수도 취수원에 오염등 도시공해를 유발시키는 지역이 아닐 것.
 - 라. 안양천·탄천수계의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이전) ①법 제13조 제 1 항 제 3 호에서 “공장의 이전”이라 함은 이전전과 이전후의 공장을 폐쇄하고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공장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 이전할 수 있는 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이전촉진지역안에서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별표2에 해당하는 공장의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2. 제한정비지역안에서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의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3. 이전촉진지역안의 공장의 제한정비지역안의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제22조 (공장설치등의 허가) 법 제13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신청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전대상공장의 범위) 법 제15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대상공장은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한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은 제외한다.

제24조 (이전대상공장의 지정) ①상공부장관이 법 제1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여야 할 공장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경계의 안정적·균형적 발전
 2.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의 필요성
- ②상공부장관이 법 제1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여야 할 공장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공업 배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이전하여야 할 공장의 범위
 2. 이전하여야 할 지역
 3. 이전시기
 4. 이전에 따른 지원사항
 5. 제 1 호 내지 제 4 호 이외에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상공부장관은 법 제15조 제 3 항에 의한 공고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공장의 이전을 명하여야 한다.

④공장의 이전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이전 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장 이전의 기간 연장) 상공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전 기간내에 이전할 수 없는 경우
2. 경제적·기술적 이유로 이전기간 내에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 (지원시설) 법 제17조제 2 항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수시설
2. 교통시설
3. 전력시설
4. 환경오염 방지시설

제27조 (공업단지예정지의 지정신청) ①법 제2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안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단지예정지지정신청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미리 관계 부처의 장 및 당

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③상공부 장관이 유치지역안에 공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공업단지 예정지를 지정 할 수 있다.

제28조 (공업정비특별구역내의 공장의 신·증설 금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없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2. 공장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

제29조 (정비대상 공장의 이전기간) 법 제24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은 2 년으로 한다.

제30조 (공장이전의 신고) ①법 제25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이전 신고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 장관 에 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8 조제 2 항 및 제 9 조의 규정은 제 1 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공장설치신고서”는 “공장이전신고서로” “공장설치신고확인서”는 “공장이전신고확인서”로 본다.

제31조 (이전명령위반에 대한 조치예고기간) 법 제29조 제 2 항의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2조 (공업배치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 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상공부 기업차관보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공부 공업단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2. 경제기획원 투자심사국장
3. 내무부 지방개발국장
4. 재무부 이재국장
5. 농수산부 농지관리국장
6. 상공부 중소기업국장
7. 건설부 산업입지국장
8. 건설부 산업입지국장
8. 건설부 도시국장
9. 보건사회부 환경관리관
10. 제 1 무임소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2 급 공무원 1 인
11. 서울특별시 산업국장
13. 공업입지 및 공업배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중에서 상공부 장관이 위촉한 자

제33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32조제 2 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제3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업배치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이전촉진지역안의 이전대상공장에 관한 사항
3. 유치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업유치계획에 관한 사항
5. 제 1 호 내지 제 4 호이외에 상공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의 회의에 부의할 의안은 회의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간 사) ①위원회에 간사 1 인을 둔다.

②간사는 상공부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8조 (수 당) 위원회의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40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1 (지원비용) 법 제31조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용지의 매수비용
2. 지원시설의 설치비용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비용
4. 기타 조경비용

제42조 (보 고) 법 제32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 장관에게 보고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의 입지·대지면적 및 건축 면적에 관한 사항
2. 생산제품·생산능력 및 생산시설등 생산에 관한 사항
3. 연료·원재료 및 제품의 수송에 관한 사항
4. 용수·전력등 지원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종업원의 고용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사항

제43조 (권한의 위임)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수출자유지역안의 공장에 관한 권한은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과 이리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 변경등의 권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명령등에 관한 사항
4. 법 11조의 규정에 의한 과다공장용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의 매각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9.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0. 법 제3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한 사항
11. 법 부칙 제 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관한 사항

제44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 조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7 조, 제 8 조 및 부칙 제 2 조제 1 항의 규정은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 조 (경과조치) ①도지사는 이 영 시행당시 법 부칙 제 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치 또는 설치중인 자의 공장대지면적과 공장건축면적을 조사하여 이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 2 조제 2 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별표 1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③법 부칙 제 2 조제 3 항의 “대통령령이 다시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의 조성허가를 받은 것은 제20조제 2 호 “가”의 공장용지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이미 건축법 제44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수도권내 공장건축 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지방공업개발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공업개발장려지구안에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업 종 구 분	달성기간
1. 담배, 식료품제조업	1년
2. 섬유, 의복, 가죽산업	1년
3. 나무, 나무제품제조업	1년
4. 종이, 종이제품제조업, 인쇄출판업	1년
5. 화학물과 화학, 석유, 석탄, 고무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2년
6. 비금속, 광물제조업	2년
7. 제 1 차금속산업	2년
8. 조립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2년
9. 기타제조업	2년

[별표 2]

1.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제조업
2. 우유처리업
3.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식빵과 기타 빵 제조업
4. 얼음 제조업
5.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6. 직물제품제조업(직물포대 및 캔버스제품 제조업은제외한다)과 편직외의 제조업
7. 의복제조업
8. 제재업
9. 목재건구제조업과 목재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10. 인쇄·출판 및 관련산업
11.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과 레미콘 제조업
12. 연탄제조업 및 도시가스 제조업
13. 동일단지안에서 제 1 호 내지 제12호에 계기한 사업에 부수되어 행하여지는 제조업
14. 제 1 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제조업으로서 상공부장관이 도시시민생활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업배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제조업